

# 보증상담신청서 (20 년 월 일)

담당	부점장

## 상담전 체크리스트

- 현재 휴폐업중이거나, 사업자등록증 발급전 상태인지 여부 여 부
- 최근 6개월 이내 압류(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재산의 권리침해 사실 있음 없음
- 각종 대출금 연체, 국세·지방세 체납, 신용등급 8등급 이하 있음 없음

※ 상기 체크리스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보증진행이 불가합니다.

### 1 고객정보

- 상 호 : \_\_\_\_\_
- 대표자명 : \_\_\_\_\_
- 사업자번호 : \_\_\_\_\_ - \_\_\_\_\_ - \_\_\_\_\_
- 생년월일 : \_\_\_\_\_
- 법인번호 : \_\_\_\_\_ - \_\_\_\_\_
- 휴대폰 : \_\_\_\_\_ - \_\_\_\_\_
- 설립일자 : 20 . .
- 종업원수 : \_\_\_\_\_
- 업종(제품) : \_\_\_\_\_ ( )
- 우편수령 : 사업장 거주주택 거부

### 2 주소정보

- 사업장주소 : 부산시 \_\_\_\_\_ 구(군) (Tel : - )

①소유여부 : 여 부 ②소유자 : \_\_\_\_\_ ③임차보증금 : \_\_\_\_\_ 만원

④소유자관계 : 본인 배우자 기타( ) ⑤월세 : \_\_\_\_\_ 만원

- 거주주택 : \_\_\_\_\_ 시(도) \_\_\_\_\_ 구(군) (Tel : - )

①소유여부 : 여 부 ②소유자 : \_\_\_\_\_ ③임차보증금 : \_\_\_\_\_ 만원

④소유자관계 : 본인 배우자 기타( ) ⑤월세 : \_\_\_\_\_ 만원

- 기타소유부동산 주소

### 3 영업 규모 및 현황

- 지난 1년매출 : \_\_\_\_\_ 만원 • 금년 \_\_\_\_\_ 월까지 매출 : \_\_\_\_\_ 만원

- 4 보증기관 이용여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없음

※ 신·기보 모두 이용중이거나, 기존 보증금액이 보증한도를 초과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5 신용보증 신청금액 : \_\_\_\_\_ 만원 (자금용도 : \_\_\_\_\_ )

신용보증 신청인 : \_\_\_\_\_ (인)

**상담전 고객안내사항**

**안내여부**

- 보증상담은 신청자(배우자 및 동행자 포함)의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조회 및 CB신용등급조회후 가능하며,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확인에 협조 바랍니다. **보증상담신청서는 신용정보조회 근거자료로 재단에서 보관하며 고객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3년보관)**

여 부
- 신용보증상담내용을 기초로 보증심사가 진행되며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보증심사 기각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 부
- 불법보증브로커 개입이 인지될 경우 「보증거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지원 후에도 회수조치 할 수 있으며, **보증브로커(대출알선인·대출중개인)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컨설팅수수료나 성공보수를 요구할 경우 재단직원에게 연락바랍니다.**

여 부
- 재단 보증수수료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연1%내외로 산출되며, 기한연장시 연장되는 기간만큼 보증료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1년초과 장기보증의 경우 보증기간과 상환방법에 따라 보증료 납부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예금등의 담보가 있으신 고객님의께서는 담보대출을 이용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여 부
- 재단은 보증료 이외에 어떤 수수료도 받지 않으며, 재단 법인계좌가 아닌 직원개인계좌로 보증료를 납입받지 않습니다. **피싱전화등 금융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여 부

**상담자 의견 및 특기사항**

- 상담직원 : \_\_\_\_\_
- 진행여부 : 서류교부 상담기각 (기각사유 : \_\_\_\_\_)
- 담당부점 : 본점 부산진 동 서 남 북 중, 담당자 : \_\_\_\_\_
- 상담금액 : \_\_\_\_\_ 백만원 • 신·기보·재단 기이용금액 : \_\_\_\_\_ 백만원)
- 연 보 인 : \_\_\_\_\_ (관계 : 배우자 대표이사 과점주주 실제경영자 기타 )
- 보증상품 : \_\_\_\_\_
- 자금종류 : 일반 정부소상( \_\_\_\_\_ ) 부산시소상 부산시창업  
자영업에희망을 기타( \_\_\_\_\_ )
- 보증기간 : 총 \_\_\_\_\_ 년, (상환방법 : \_\_\_\_\_ 년거치, \_\_\_\_\_ 년분할상환)
- 기타 의견

• 배우자경영참여 :  여  부  
 ※ 배우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와 배우자 모두 보증심사 대상이 됩니다.

[별지 1] <개인기업-신청기업>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부산신용보증재단 귀중**

재단과의 신용보증약정 또는 채권관리 등과 관련하여 재단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 하는 것과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보증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li> <li>■ 신용보증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li> <li>■ 채권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li> <li>■ 법령상 의무이행, 고객만족도 조사, <b>설문 및 조사·연구수행</b>, 기일안내 상담, 각종 기일도래 DM발송 등 부수업무 수행</li> <li>■ 기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 의한 업무의 수행 등</li> </ul>
----------	--------------------------------------------------------------------------------------------------------------------------------------------------------------------------------------------------------------------------------------------------------------------------------

수집·이용할 항목	<p><b>[필수적 정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식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li> </ul> </li> <li>■ (금융)거래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li> </ul> </li> <li>■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li> <li>▶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li> </ul> </li> <li>■ 개인식별정보 외에 기업실태표 등에 기재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가여부, 가족사항, 학력 등</li> </ul> </li> <li>■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li> </ul>
-----------	-------------------------------------------------------------------------------------------------------------------------------------------------------------------------------------------------------------------------------------------------------------------------------------------------------------------------------------------------------------------------------------------------------------------------------------------------------------------------------------------------------------------------------------------------------------------------------------------------------------------------------------------------------------------------------------------------------------------------------------------------------------------------

	<p><b>[선택적 정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 및 자격증, 수상경력, 전자우편주소 등</li> </ul> </li> </ul> <p>※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p>
--	--------------------------------------------------------------------------------------------------------------------------------------------------------------------------------------------------------------------------------------------------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신용보증 종료일까지(신용보증약정서상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은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본 계약의 소멸 또는 구상채무 등의 소멸시까지) 위 이용목적 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갱신 등으로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본 계약이전 발생한 신용거래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 계약의 소멸시점부터 5년까지) 단, 신용보증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재단의 리스크 관리 등 통계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신용보증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신용보증 등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 제공·활용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및 활용대상 기관	<p>가. 제공 및 활용대상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집중기관 : <b>한국신용정보원</b> 등</li> <li>▶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주) 등</li> </ul> </li> <li>■ 신용정보제공·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대상 기관 : <b>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b>,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미소금융재단,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주)신용회복기금,한마음금융(주) 등</li> </ul> </li> </ul>
------------------	-------------------------------------------------------------------------------------------------------------------------------------------------------------------------------------------------------------------------------------------------------------------------------------------------------------------------------------------------------------------------------------------------------------------------------------------------------------------------------

	<p>나. 제공받는 기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보증 채권자, 연대보증인 등에 대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대상 기관 : 금융회사, 제2금융회사, 담보어음 등의 채권자, 전자상거래보증의 전자상거래 증개회사 등</li> <li>▶ 기타 제공 대상자 : 재단 신용보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li> </ul> </li> <li>■ 수탁업체에 대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단이 고객만족도 조사, 보증료 납부안내문 발송 등을 외부회사에 위탁한 때에는 당해 수탁업체에 제공합니다.</li> <li>▶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며, 수탁업체의 추가·변경 및 제공 목적의 세부적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li> </ul> </li> </ul>
<p>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및 재단의 활용목적</p>	<p>가.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li> </ul> </li> <li>■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li> <li>▶ <b>정부지원정책 안내, 보증정책이용 설문·만족도 및 조사연구 목적을 위한 자료로 활용</b></li> </ul> </li> <li>■ 신용보증 채권자, 연대보증인 등에 대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권자의 피보증인 본인 확인, 전자상거래보증의 전자상거래정보 전송</li> <li>▶ 연대보증인의 피보증인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등 채무관련 신용정보 확인</li> </ul> </li> <li>■ 수탁업체에 대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보증 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및 고객만족도 조사, <b>설문 및 조사·연구</b> 등을 위한 위탁업무의 수행</li> </ul> </li> </ul> <p>나. 재단의 활용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활용의 목적</li> </ul> <p>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재단과의 신용보증, 채권관리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p>
<p>제공할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li> <li>▶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당좌(가계당좌)예금 등</li> <li>▶ 신용능력정보 : 재단·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li> <li>▶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등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li> </ul> </li> </ul> <p>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신용)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 등에게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체개요(연혁, 관계기업 등) 및 대표자와 경영진(실제경영자, 주주사항 등)</li> <li>▶ 사업장 및 가동현황(주요시설 및 제품, 규격표시 및 특허, 시설투자계획, 면허 등)</li> <li>▶ 영업상황(판매실적 및 계획, 주요구매처 등) 및 금융회사 거래상황(여신거래, 차입금, 담보물 등)</li> <li>▶ 재무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li> <li>▶ 기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li> </ul> </div> </li> <li>■ 신용보증 채권자, 연대보증인 등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등 신용보증 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에 한함</li> </ul> </li> <li>■ 수탁업체에 대한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li> </ul> </li> </ul> <p>※ 본 동의 이전에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p>
<p>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보유·이용기간</p>	<p>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p>
<p>제공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p>	<p>재단의 조회 결과 본인과의 신용보증 등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본인 또는 관련기업이 신청한 신용보증 약정 시 또는 본인 관련 채무가 전액상환되는 시점까지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재단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신용보증이 재단 또는 본인(관련기업)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p>
<p>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p>	<p>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용보증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p>

## 행정·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정보제공·이용·활용 동의서

### 부산신용보증재단 귀중

본인은 아래와 같이 행정·공공기관 및 금융회사가 본인에 대한 정보를 재단에 제공하고 재단이 사용목적에 따라 이용·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대상기관 :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 제공정보 : 부동산정보,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등), 대여금고 이용정보
- 사용목적 : 신용보증, 구상권행사      ■ 동의서 유효기간 : 보증채무 또는 구상채무 소멸시까지

### 1. 기업신용정보 제공·이용 및 행정·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정보제공·이용·활용 동의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이용·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민(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 \* 공동대표이사, 동업자의 경우 추가 기재사항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민(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민(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행정·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정보제공·이용·활용 동의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고객 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 \* 재단이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집·이용·동의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 선택적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성명			(인)
제공·활용 동의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주민번호	-		
행정·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제공동의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연락처			
고유식별 정보동의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연락처			
수집·이용·활용 동의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 선택적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성명			(인)
제공·활용 동의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주민번호	-		
행정·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제공동의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연락처			
고유식별 정보동의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연락처			

본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20    년    월    일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공동이용의 목적(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는 사무) : 신용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의 업무처리에 수반되는 사무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36종

구분	선택	공동이용 행정정보	선택	공동이용 행정정보	선택	공동이용 행정정보
필수 서류  (일괄선택시 체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표 등초본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증명	<input type="checkbox"/>	국세납세증명
	<input type="checkbox"/>	지방세 납세증명서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input type="checkbox"/>	표준재무제표증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확인서	<input type="checkbox"/>	법인등기사항증명서	<input type="checkbox"/>	지적전산자료
	<input type="checkbox"/>	휴업사실증명	<input type="checkbox"/>	폐업사실증명	<input type="checkbox"/>	건물등기부등본
	<input type="checkbox"/>	건축물대장	<input type="checkbox"/>	토지(임야)대장	<input type="checkbox"/>	
선택 서류  (일괄선택시 체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건설기계등록원부	<input type="checkbox"/>	건설기계사업등록증	<input type="checkbox"/>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input type="checkbox"/>	건설업등록증	<input type="checkbox"/>	공장등록증명서	<input type="checkbox"/>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확인서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input type="checkbox"/>	디자인등록원부	<input type="checkbox"/>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input type="checkbox"/>	산재보험안납증명원
	<input type="checkbox"/>	상표등록원부	<input type="checkbox"/>	선박원부	<input type="checkbox"/>	실용신안등록원부
	<input type="checkbox"/>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input type="checkbox"/>	자동차등록원부	<input type="checkbox"/>	자동차등록증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증명서	<input type="checkbox"/>	특허등록원부	<input type="checkbox"/>	재외국민등록부등본
<input type="checkbox"/>	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3. 이용기관의 명칭 : 부산신용보증재단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금융거래정보 이용 동의서

본 동의서는 귀하(사)의 서류제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재단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확인서를 직접 전자적으로 수신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거 제출받는 것입니다.

1. 동의서 제출기관 : 국민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지역농협, 기업은행, 제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SC제일은행,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2. 상기 금융기관에 대한 동의 내용

본인의 금융거래정보(여신, 담보, 연체, 당좌 및 카드결제 등)를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동의내용

- ① 본인을 대리하여 귀 재단이 상기 금융기관에 대해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대신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거래정보를 귀 재단이 대신 수령 또는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2"부터 "3"까지의 사항은 다음의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 ① 본인이 귀 재단에 신용보증(기보증회수보증 포함)을 신청한 경우
- ② 본인이 귀 재단에 조건변경(기한연장 포함)을 신청한 경우
- ③ 신용보증약정서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④ 본인에 대해 귀 재단에서 사후관리, 사고정상화 처리 등 보증업무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5. 동의서 유효기간

본 동의서는 본인이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용보증이 해지되는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한 신용보증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20    년    월    일

“금융거래정보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표시란

성 명	(인)	주민번호		연락처	
성 명	(인)	주민번호		연락처	
성 명	(인)	주민번호		연락처	

\* 금융거래정보 이용 동의는 피보증인에 한함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 동의서 >

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①중소벤처기업부 ②중소기업진흥공단 ③기술보증기금 ④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⑤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⑥창업진흥원 ⑦중소기업유통센터 ⑧한국벤처투자(주) ⑨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공 목적	1.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사업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2.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 안내 등
	제공 항목	사업자번호(법인번호), 기업명, 지원사업명, 선정일자, 지원일자, 지원금액, 기업주소, 기업대표전화번호, 기업대표이메일, 주생산물
	보유·이용 기간	기업의 해당 지원사업 참여종료 후 5년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중소기업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연계지원정보 미제공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제공 동의 여부	위와 같이 정보를 좌측의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제공된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좌측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보증지원 안내말씀

■ 아래 항목에 저촉이 있을 경우, 보증신청이 취소될 수 있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연체중인 기업
- ② 금융거래확인서상 3개월이내 30일이상 혹은 10일이상 계속된 연체 4회 이상인 기업
- ③ 최근 6개월 이내 신용정보관리대상자 (구, 신용불량거래자) 규제 혹은 부동산 등에 (가)압류 사실 등이 있는 기업
- ④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 보증신청시 유의사항

- ① 명의차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불법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되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세금체납 및 채무관계에 의한 압류, 가압류 등의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② 재단에서는 위 사유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와 실제경영자가 다를 경우 보증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실제경영자가 배우자인 기업에 한해 보증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경영자인 배우자는 반드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야 합니다.
- ③ 창업후 3개월 이내 기업은 총투자금액, 본인자금 투입액, 입차보증금의 지급여부, 영업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소득증빙 자료제출 (택 1)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3개월 건강보험납부명세서, 국민연금납부명세서 중 1종류 (기타 투입자금 통장내역, 매출 또는 매입 전표 등을 확인함.)
- ④ 과도한 신용대출보유, 신용평가등급, 매출액,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신용조사후 최종 지원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며, 심사과정에서 거절 및 감액될 수 있습니다.
- ⑤ 신용보증 수수료는 년 1%를 기준으로 신용도에 따라 가감되며, 보증서 발급전에 일시에 납부하셔야 합니다.(보증기한까지 일괄수납)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_\_\_\_\_ (인)



<붙임 3>

##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신청(추천서)

( ) 신용보증재단 귀중

### 1. 신청기업

기업체명		대표자		설립일자 (개업일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민)번호		홈페이지	
업종		주요제품		상시종업원	명

### 2. 신청내용

보증신청내용		주채무내용	
보증종류	대출보증	대출과목	
보증금액		대출금액	
보증기한	년	용도	운전자금
보증방법	개별보증	대출기한	년
보증비율	100 %	(상환방법)	(상환방법 : )
비고			

※ 보증료 환급시 입금계좌 (본인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	--	------	--	-----	--

2020년      월      일

신청인    기업체명 :  
             대표자 :                      (인)

- 신용보증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관련 부당행위자(금융질서문란정보)로 등록되어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게 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 서비스개선을 위해 정부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설문조사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최종심사결과에 따라 보증신청금액은 일부 감액 또는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대출코자 하오니 신용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취급기관 : \_\_\_\_\_은행 \_\_\_\_\_지점장 (인)

은행 담당자 :	전화 :	팩스 :
----------	------	------



<붙임 5> 개인기업 주채무자용 동의서

실제경영자 확인서

( ) 신용보증재단 앞 20 년 월 일

1. 보증신청기업

기업체명		대표자	
주 소			
주민(법인)번호			

2. 본인은 상기 기업의 실제경영자임을 확인하며, 실제경영자로서 보증해지 시까지 신용보증재단에서 정한 주채무자 요건을 유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실제경영자 : (인)

본인 확인	직 위		성 명	(인)
-------	-----	--	-----	-----

## 신용보증약정서 보충 위임장

( )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귀중

본인 (성명 : \_\_\_\_\_)은 귀 재단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추후 귀 재단의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서 발급 시 신용보증약정서상 '신용보증원금'과 '신용보증기한'을 보충(기재)하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또한 추후 귀 재단이 보증심사를 통하여 확정된 신용보증원금과 신용보증기한을 신용보증약정서에 보충(기재)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하겠습니다.

단, 보증심사 결과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신용보증약정 및 동 위임장은 무효로서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위임인

대표자 :                   (서명)

주민등록번호 :           -

#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개별보증용)

담당자	책임자

부산신용보증재단 앞

20    년    월    일

본인은 부산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합니다)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을 부탁하기 위하여 이 약정을 체결하며,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연대하여 이 약정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제1조 신용보증의 부탁

- ①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단에게 신용보증을 부탁합니다.

신용보증원금	금	원
신용보증기한	년	월 일

- ② 제1항의 신용보증을 부탁함에 있어 신용보증원금 외에 법령 및 재단과 채권자간의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재단이 채권자에 대해 추가로 부담하는 종속채무에 대하여도 함께 부탁합니다.
- ③ 제1항의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라 함은 이 약정일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이후에 발생하는 주채무를 말하며, 재단은 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기로 합니다.

## 제2조 신용보증방법

- ① 재단은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신용보증서의 발급(전자적 방식 포함), 어음보증,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보증채무의 이행범위, 면책사항 등 구체적인 신용보증계약의 내용은 법령 및 재단과 채권자 간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그 신용보증계약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기로 합니다.
- ③ 본인 및 연대보증인은 발급된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재단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이 소멸될 때까지 이 약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④ 주채무가 분할실행되는 대출인 경우에 재단은 제1조의 신용보증원금 범위 내에서 여러 건으로 나누어서 신용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 제3조 보증료 등의 납부

- ① 본인은 재단이 제1조 제1항의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료를 납부하겠으며, 보증료율(최고 연율 2%)·계산방법·납부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단, 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보증료를 1년마다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일시에 납부하기로 합니다.
- ② 본인이 납부기일 내에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보증료에 대하여 연율 10%를 곱하여 산출한 연체보증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 ③ 본인이 기한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채무에 대

하여 재단이 정하는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추가보증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 ④ 제1항의 보증료 및 제3항의 추가보증료는 본인의 기업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중소기업이외의 기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 이후 최초 보증료 납부일부터 재단이 정한 중소기업이외의 기업의 보증료율에 따라 납부하기로 합니다.
- ⑤ 재단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 이후 최초 보증료 납부일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되기로 합니다.

#### 제4조 주채무 이행의무

본인은 재단이 신용보증한 주채무원금과 종속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변제하여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제5조 사전구상

- ①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재단이 사전 통지나 독촉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이의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 1. 제4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 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 4.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때
  - 5. 폐업을 하였거나 조업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때
  - 6.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 7.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 포함)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 8. 재단이 이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
  - 9. 법인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개인기업의 공동경영자(실제경영자 포함)에 대하여 위 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본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때
  - 10. 본인이 연대보증한 신용보증기업에 대하여 재단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사유가 발생한 때
  - 11. 전 각호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
- ②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재단이 서면으로 그 사유의 해소 또는 채무상환을 통지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재단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이의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 1. 이 약정서 제3조(보증료 등의 납부), 제8조(담보·보험), 제17조(자금용도 준수 의무)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 2. 보증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본인 및 연대보증인은 재단이 신용보증한 주채무 또는 재단에 대한 상환채무와 관련한 담보유무에 불구하고 재단이 보증채무이행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재단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주채무의 면책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 ④ 재단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전상환금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기로 합니다.
  1. 재단이 신용보증한 주채무의 변제에 사용.
  2.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관련 구상채권의 변제에 충당.
- ⑤ 제1항 및 제2항의 사전상환금을 제4항 제2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전상환금과 이에 대하여 사전상환일로부터 재단의 보증채무이행일까지 재단이 보증채무이행시 적용할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의 합계액이 재단에 상환되는 것으로 합니다.

## 제6조 채권보전조치

- ①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단이 사전통지없이 본인 및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재단이 본인 및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할 때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공탁보증보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7조 통지의무

- ① 본인은 주채무 이행의 청구를 받거나 주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곧 그 사실을 재단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② 채권자와 본인 사이에 주채무의 경계, 상계, 면제, 혼동, 시효의 완성 또는 담보물건의 변동등 이 약정에 의한 재단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은 곧 그 사실을 재단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재단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그 금액에 대한 상환채무를 부담하며 곧 변제하기로 합니다.

## 제8조 담보·보험

- ① 본인 및 연대보증인의 신용악화, 담보가치 감소 등의 사유로 재단이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본인은 재단이 인정하는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추가로 세우기로 합니다.
- ② 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단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에 의하여 추심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모든 비용을 뺀 잔액을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본인은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곧 변제하기로 합니다.
- ③ 본인은 담보에 대하여 재단이 요청하는 경우 재단이 정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재단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며, 이 약정이 존속하는 동안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보험가입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단이 보험료를 대신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계속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도 이의 없기로 합니다.

## 제9조 보증채무이행 및 통지 등

- ① 재단이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재단은 법령 및 채권자와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기로 합니다.
- ②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그 사실을 본인과 연대보증인이 신고한 최종주소(신고한 최종주소와 공부상의 최종주소가 다른 경우 공부상의 최종주소)로 서면통지한 경우에는 그것이 연락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도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

달한 것으로 보기로 합니다.

- ③ 재단이 보증채무이행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는 본인이 채권자와 체결한 계약의 조항을 적용하는 외에 이 약정의 각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제10조 상환범위

- ①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재단이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3.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재단과 채권자간의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재단이 채권자의 담보물을 이전받는 경우 채권자가 담보물 유지·보전을 위해 지출하고 재단이 신용보증약관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한 경비료, 화재보험료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5.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 ②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재단이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1.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재단이 대신 지급한 보험료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 ③ 제1항과 제2항의 재단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금융회사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재단이 정한 율을 말합니다
- ④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재단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율과 계산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 제11조 연대보증인의 책임 등

- ① 연대보증인(「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 포함)은 제10조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본인과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은 제10조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연대보증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보증기간 이내에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채무 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이 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항의 보증채무최고액에도 불구하고 상환하기로 합니다.
  1. 연대보증채무 이행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보증채무 상환일까지 재단이 정하는 이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2. 연대보증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위해 재단이 대신 지급한 비용
- ④ 재단이 신용보증한 주채무에 대해서도 보증한 경우 그 주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도 그 연대보증인은 재단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⑤ 연대보증인은 본인과 재단 사이에 이 약정에 의한 잔존채무가 있는 동안에는 재단에

대해 변제함으로써 대위취득한 권리를 재단에 앞서서 행사하지 아니하며, 재단과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재단 다음으로 변제받기로 합니다.

### **제12조 대위담보권으로부터의 변제**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재단은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제공한 담보에 대한 대위권자로서 그 담보권으로부터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제13조 변제 등의 총당순서**

- ① 본인 및 연대보증인의 변제금액 또는 재단의 회수액이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모든 채권의 안전하고 확실한 보전을 위하여 재단이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총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 ② 총당대상 대위변제금이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소멸시효의 도래순서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총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 **제14조 위험부담, 면책조항 등**

- ①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재단에 제출한 증서, 기타 문서가 불가항력, 전쟁, 천재지변, 재해 또는 운반도중의 사고 등 재단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 손상, 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에는 재단의 장부 및 전산매체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재단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 ② 증서, 기타 문서의 인영 또는 서명이 재단에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그의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며, 증서 또는 기타문서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 **제15조 신고사항의 변경**

- ① 본인은 인감, 서명, 상호, 명칭, 대표자, 주소 및 기타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 연대보증인은 인감, 서명, 주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기로 하며, 서면신고가 있기 전에는 재단이 변경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도 이의 없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신고를 게을리함으로써 재단으로부터 통지 또는 송부된 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기로 합니다.

### **제16조 협조의무**

- ① 본인의 재산, 경영, 업황 등에 대하여 재단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회보하며, 장부 열람등 조사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 ② 본인의 재산, 경영, 업황 등에 관하여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단의 요구가 없더라도 곧 재단앞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③ 본인은 본인의 요청 또는 재단의 필요에 의하여 본인의 사업에 관한 경영지도를 재단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기로 합니다.
- ④ 본인은 매 결산기마다 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결산일 이후 3월이내 재단에 제출하기로 합니다.

### **제17조 자금용도 준수 의무**

본인은 재단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하여 받은 자금을 사용함에 있어 보증신청한 때에 제시한 자금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지 않기로 합니다.

### **제18조 특별관리**

본인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우려가 있거나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재단의 권리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재단은 직원 등을 파견하여 본인의 재산 및 경영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기로 합니다.

### **제19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정에 의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소송의 1심법원은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아래 법원중 재단이 선정하여 제소하는 법원의 관할로 하기로 합의합니다.

1. 재단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
2. 재단의 이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 거래영업점(거래영업점이 이관된 경우 이관받은 영업점) 소재지 관할법원
3. 재단이 채권관리를 위하여 다른 영업점으로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 이관받은 영업점 소재지 관할법원
4.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20조 신용보증기한 자동연장**

제1조의 신용보증기한까지 본 신용보증서를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 재단은 본인에 대한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거쳐 기한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 기한연장을 위한 별도의 조건변경신청서를 받지 않고 본인 명의로 귀 재단 명의 계좌에 연장되는 보증기한까지의 보증료를 입금한 때에는 보증기한을 연장할 수 있기로 합니다.

### **제21조 특약사항**

--

### 신용보증약정 관련 중요사항 설명

□ 재단이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보증료는 보증을 하는 날에 보증기한까지의 보증료를 미리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보증료를 1년마다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에 따라 최고 연율 2%이내에서 결정됩니다.

□ 본인에 대하여 이 약정서 제5조에서 정한 사전구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별도의 사전통지나 독촉절차 없이도 법적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적조치와 관련하여 재단이 대신 지급한 제비용은 본인 및 연대보증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모든 연대보증인은 각각 재단에 대하여 본인과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합니다.

- 본인에 대하여 이 약정서 제5조의 사전구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본인에 우선하여 연대보증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거나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먼저 법적조치를 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인이 2인이상 있는 때에도 각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채무액을 나누어 변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개별보증의 경우 보증책임은 신용보증서의 보증기한에 주채무가 이행되어 재단의 보증책임이 소멸될때까지 계속됩니다.
-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은 별도의 연대보증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며,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채무최고액과는 별도로 법적비용 및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재단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본인 및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이행 금액과 손해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 손해금율은 법령상의 최고 연율 범위내에서 금융회사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재단의 이사회에서 정합니다.
- 재단이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 등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본인 및 연대보증인은 이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 재단은 본인 및 연대보증인에게 이 약정서의 중요한 내용 및 보증기업의 채무관련 신용정보 등을 설명하고 약정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재단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약정서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약정서 설명듣고, 사본 받았음”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채무관련 신용정보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및 부도정보를 말한다.

재단직원으로부터 약정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약정서 사본을 받은 경우에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채무의 기한이 이 약정서 제1조 제1항의 신용보증기한 이후로 연장되는 경우 본인이 재단에 보증기한 연장 의사를 전신통지하고 본인 명의의 보증료를 송금하면 재단에서 보증기한을 연장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호 :  
대 표 : (인)

<b>본인(신용보증을 부탁한 기업)</b>  상 호 : 대 표 : _____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약정서 설명듣고, 사본 받았음.  _____ (인)  확인직원
----------------------------------------------------------------------------------	------------------------------------------------

이 약정서 제1조제1항 신용보증기한의 연장 동의 여부에 대하여 아래 '연장동의'란에 사전 동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b>연대보증인</b> : _____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연장동의 : _____ (인)	1. 약정서 설명듣고, 사본 받았음. 2.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에 관한 설명 들었음.  _____ (인)  확인직원
<b>연대보증인</b> : _____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연장동의 : _____ (인)	1. 약정서 설명듣고, 사본 받았음. 2.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에 관한 설명 들었음.  _____ (인)  확인직원
<b>연대보증인</b> : _____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연장동의 : _____ (인)	1. 약정서 설명듣고, 사본 받았음. 2.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에 관한 설명 들었음.  _____ (인)  확인직원